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사업비의 100분의 30”을 “사업비 중 기업(광산) 규모에 따라 대·중견기업(공기업 포함) 100분의 40, 중기업 100분의 30,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별표 3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부담금의 부과율은 광해방지사업비의 일부로 기업(광산)의 규모에 따라 대·중견기업(공기업 포함) 100분의 40, 중기업 100분의 30,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)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0조(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에 따른 <u>사업비의 100분의 30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비 중 기업(광산) 규모에 따라 대·중견기업(공기업 포함) 100분의 40, 중소기업 100분의 30, 소기업 100분의 20으로 한다.</u>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